

예방규정 제정[]
변경[] 제출서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수리일자	처리기간 5일
제 조 소 등 의 설 치 자	성명		
	주소 (전화번호 :)		
제 조 소 등 의 설 치 장 소			
제 조 소 등 의 구 분		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	
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	년 월 일 / 제 호		
위험물의 유별, 품명 (지정수량), 최대수량		지정수량의 배 수 배	
예방규정제정(변경)연월일	년 월 일		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정(변경)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제 출 자

(전화번호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예방규정을 수리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소방서장

직인

첨부서류	예방규정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	--------

공지사항

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성명 포함)을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